

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22. 9. 30 규칙 제736호

제1조(「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의 개정) 「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”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」의 개정) 「이천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4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」의 개정) 「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”로 한다.

제4조(「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「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1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